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2월 8일

나. 발 의 자: 신홍식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2.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신홍식 의원)

가. 제안이유

○ 4차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이뤄지는 정보·의료·교육서비스 등의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서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4차산업 기업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등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제정조례안은 4차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의 차세대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 “4차산업 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림.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와 제6조(실태조사)는 4차산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와 제8조(4차산업 육성기업 등의 지원)는 기본계획에 따라 4차산업 육성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검토 결과
 - 정보 및 통신 기술(ICT)과 기존 영역의 경계가 융합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도래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국정과제로 삼아 4차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 2021.7.20.)를 제정하여 미래형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우리 구(區)는 과거 제조업 위주의 산업에서 탈피하여 4차산업 관련 기반 마련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본 조례 제정은 4차 산업 관련 기업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행정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홍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
----------	-----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신홍식·유승용·우경란
이성수 의원(4인)

1. 제안이유

4차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이뤄지는 정보·의료·교육서비스 등의 지식집약적 산업으로서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4차산업 기업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등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4. 2. 13.~ 2. 18.):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하 “구”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 및 일자리·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제3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4차산업 기업) ① 4차산업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것
2.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 정보통신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것
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4.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

5. 인공지능(AI)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6. 삼차원(3D)프린팅산업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

7. 항공우주산업, 드론산업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

8. 기타 구청장이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산업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 및 구 관내 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2. 4차산업 기업 육성 추진방향 및 시책
3.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을 4차산업 육성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8조(4차산업 육성기업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4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대학 및 지역 관련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